

제206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2014. 12. 08)

조 례 안 검 토 보 고 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상대]

--- 목 차 ---

의 안 번 호	건 명	페이지
2014 ~ 91	거창군 안전도시 조례안	1
2014 ~ 92	거창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5
2014 ~ 93	거창군 맞춤형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	10

<의안번호 제2014 - 91호>

거창군 안전도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제출일자 : 2014. 11. 20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14. 11. 21

2. 제안이유

-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안전도시의 구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거창군 안전도시 사업』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을 갖추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을 정함(안 제1조)
- 나. 용어의 정의 및 책무를 정함(안 제2조 ~ 제4조)
- 다. 안전도시사업의 범위 및 지원사항, 위탁운영에 관하여 정함(안 제5조 ~ 제7조)
- 라. 안전도시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제11조)
- 마. 실무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 조치 : 2015년도 29,200천원 예산확보 예정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과 합의

라. 기타 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4.10. 17. ~ 2014.11. 06.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군민의 안전의식과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선진안전문화를 조기에 정착하여 군민 누구나 건강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제3조 ~ 8조에 군수의 책무와 군민의 권리와 책무, 사업의 범위와 사업의 지원, 위탁운영과 안전도시 협의회의 설치 등을 명시하였으며,

- 제9조 ~ 12조에 협의회 구성과 운영,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제 10조와 11조에 협의회 위원의 임기와 해촉,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음.

○ 이와 같이 군민 모두가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상 원칙이나 내용 등에 있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 카.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 하. (생략)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 사. 자연보호활동
 -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 가. ~ 마. (생략)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거창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제출일자 : 2014. 11. 20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14. 11. 21.

2. 폐지이유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자연발생유원지의 오염방지를 위한 폐기물 처리비용 등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쓰레기종량제 시행으로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는 이용객에게도 수수료를 징수하게 되어 이용객의 불만민원 급증, 국립공원 등의 입장료 징수 폐지에 따른 형평성 문제,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 등으로 '09.01.01부터 현실적으로 수수료를 폐지하였으므로 이미 조례의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거창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제5항
-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
 -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부패영향평가 결과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14. 10. 30. ~ 11. 20.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4)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이 폐지 조례안은 자연발생유원지 오염방지를 위해 공포(1990년 3월 26일)하여 시행 왔으나

그 이후 2004년도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고, 국립공원 등의 입장료 징수 폐지에 따른 형평성 문제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등의 사유로 인해 현실적으로 조례의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 2014.8.7.] [법률 제11998호, 2013.8.6., 타법개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07.8.3., 2010.7.23., 2013.7.16.>

② ~ ④ (생략)

⑤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

⑥ ~ ⑨ (생략)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4.4.30.] [환경부령 제553호, 2014.4.30., 타법개정]

제15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이하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8.4., 2011.9.27., 2014.1.17.>

1.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2. 산간·오지·섬지역 등으로서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일정한 기간에만 다수인이 모이는 해수욕장·국립공원 등 관광지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용객의 수가 많은 기간에 한정하여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세부평가서

-자연발생유원지 입장료 징수 개선-

2009.10.

I 평가배경

□~ 생략 ~

II 현황 및 문제점

1. 자연발생유원지 운영현황

□ 자연발생유원지의 의미

- 자연발생유원지는 자연공원법 및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국·도·군립공원과 관광지 이외의 지역으로서 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임.
 - 산간계곡·하천 등의 자연발생적인 행락지로 사람이 많이 모여 쓰레기를 수거할 필요성이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임.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마을관리휴양지, 비지정관광지의 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나, 같은 의미임(이하 “자연발생유원지”라 함)

□ 쓰레기 수수료 징수 규정

- 자연발생유원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의해 지정되고, 이에 대한 쓰레기 수수료는 동법 제14조제3항에 근거하여 조례로서 정해지는 바
-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는 자연발생유원지의 쓰레기 처리 등의 경비 조달을 위하여 자연발생유원지 입구에서 입장객에게 정해진 수수료(입장료)를 직접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때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일정한 기간에만 다수인이 모이는 해수욕장·국립공원 등 관광지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용객의 수가 많은 기간에 한정하여**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 자연발생유원지 현황

- 자연발생유원지는 2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81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81개소의 관리비 총액은 8억여 원으로 유원지당 1천여만 원임.
 - 자연발생유원지는 이용객의 수가 많은 기간에 한정하여 운영함.
- 자연발생유원지의 쓰레기 수수료 징수과정에서 일어난 분쟁은 356건임.
 - 분쟁의 대부분이 수수료를 입장료로 징수하는데 있으며, 또한 국립공원 등의 수수료 폐지에 따른 수수료 징수 자체에도 불만을 가지고 있음.

□ 자연발생유원지 폐지 현황

-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하여 운영하다가 폐지한 곳은 105개소로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유원지보다 24개소가 많으며, 자연발생유원지를 전부 폐지한 지방자치단체도 16곳임.
 - 주요 폐지 사유
 - 입장객의 수수료 징수 불만에 따른 민원 급증
 - 국립공원 등의 입장료 징수 폐지
 - 다른 자연발생유원지의 수수료 징수 폐지
 - 기타, 수수료 징수에 따른 이용객의 감소 등

❖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현황

○ 입장료 폐지 사유(2007.1.1. 폐지)

- 국립공원의 공공성 제고와 사회적 갈등해소 및 국민의 문화·휴식 공간 제공 등 대국민서비스 제고를 위함.

○ 입장료 대체 예산

- 입장료 수입 289억 원 : 출연금 225억 원, 주차료 등 자체수입확대 29억 원, 매·검표원 감원 등 지출구조조정 35억 원

○ 효과

- 입장료 폐지 후 탐방객이 46% 증가하여 연간 3천만 명의 국민들에게 국립공원 이용 혜택 제공
- 기존 75개 매표소를 고객중심의 “시인마을”로 전환하여 서비스 제공
- 매표소 중심의 공원입구 관리에서 공원자원보전·복원기능 및 탐방서비스 기능 강화 등

2. 문 제 점

○ 쓰레기 수수료는 배출하는 사람에게 배출량에 따라 징수하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에 따라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연발생유원지 입구에서 입장객에게 정해진 수수료(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음.

- 이는 쓰레기 수수료 징수의 근거법령인 폐기물관리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는 이용객에게도 수수료를 징수하게 되므로 이용객의 불만의 요인이 되고 있음.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 환경부에서 '95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제도로써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람에게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담”하는 제도임.

※ 근거규정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폐기물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징수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적용지역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 폐기물 관리지역에 적용·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일정한 기간에 다수인이 모이는 등산로·유원지·해수욕장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지역(이하 "공공지역"이라 한다)도 이용객수가 많은 기간에 한해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적용(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 국립공원의 입장료가 2007.1.1. 폐지되고 이에 따라 같은 여건의 많은 자연발생유원지가 폐지됨으로 형평성 문제 발생

○ 자연발생유원지의 쓰레기 수수료 징수과정에서 이용객과의 잦은 분쟁은 행정 불신을 초래할 수 있고 더 나가서는 국민화합의 저해요인이 될 수도 있음.

III 개선의견 및 행정사항

1. 개선의견

□ 자연발생유원지 쓰레기 수수료 징수 폐지

○ 국립공원의 입장료 징수가 2007.1.1. 폐지되고 이에 따라 같은 여건의 많은 자연발생유원지가 폐지(105개소, 전체의 56%) 되었으므로 형평성을 기할 필요가 있고, 또한 관리비용(유원지 1개소 당 평균 1천여만 원)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국민화합 및 서민생활지원 차원에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 이는 법적 근거 하에 조례로서 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임. ~ 이하 생략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제출일자 : 2014. 11. 20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14. 11. 21.

2. 제안이유

- 주민 스스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가는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맞춤형 마을만들기와 주민의 풍요로운 삶의 질 제고와
- 마을만들기 사업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추진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향후 정책적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다른 법령 등과 관계(안 제1조 ~ 제5조)
- 나.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안 제6조)
- 다.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신청, 평가·포상(안 제7조 ~ 제9조)
- 라. 맞춤형마을만들기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10조 ~ 17조)
 - 마을만들기 사업의 심의·자문, 주민 전문가 등 20명 이내 구성
- 마. 마을만들기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맞춤형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치·운영(안 제18조 ~ 제2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 220백만원(2015년 본예산 편성)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4. 8. 28. ~ 9. 17.

나) 예고결과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붙임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이 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 기능 강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고 주민 스스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의 지원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 주요 내용으로는

- 6조에 마을만들기의 기본방향, 추진체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 7조~8조에 각종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규정과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 제10조~17조에 맞춤형 마을 만들기 위원회 설치와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 제 18조~20조에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치와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

- 현실적으로 농촌이 갈수록 어려워져가는 것을 볼 때, 농업인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소득을 높이고 나아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로 한 조례로서 체계상 원칙이나 내용에 있어서도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 카.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소류지(小溜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 사. 자연보호활동
 -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 가. ~ 나. (생략)

□ 「지방재정법」

[시행 2014.11.29.] [법률 제12687호, 2014.5.28., 일부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③ 삭제 <2013.7.16.>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

□ 「지방공무원법」

- 제30조의4(과견근무)** ①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한다), 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과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과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② 과견권자는 과견 사유가 소멸되거나 과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으면 그 공무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 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에서 과견된 임직원은 직무상 행위를 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④ 공무원을 과견근무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과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과견 사유·기간·절차와 과견기간 중의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